

<의안번호 제2007-29호>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9.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9. 20.

### 2.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월남전쟁참전 유공자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유지 및 명예를 높여 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임.

###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간결하게 함.
- 나. 용어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춤 (안 제2조).
- 다.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 유공자”로 하여 지원범위 확대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6.25참전유공자로만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자, 무공수훈자를 추가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라.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함(안 제3조).

마. 제명 변경으로 인한 별지서식의 일부문구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추가 소요금액 연간 20,000천원 정도(2008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다. 입법예고(2007. 6. 1.~ 6. 20.)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의원발의(정종기 의원 외 11인)로 2006년 2월 14일 제정 공포 시행되어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였던 것을 상위 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월남전쟁참전유공자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조례안에서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월남전쟁참전유공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전유공자 지원 현황

- 지원기준 :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 수당지급 참전유공자 : 626명
- 추가 지급 대상자 : 148명(월남참전 115명, 무공수훈자 33명)
- 소요예산 : 105,500천원(당초예산 85,500천원, 추가소요예산 20,000천원)

○ 그러나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자)의 규정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중 현재 지원을 제외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중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8호(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는 현행대로 지원을 제외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제7호(무공수훈자)만 삭제하여 무공수훈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제4호 : 전상군경(戰傷軍警), 제6호 : 공상군경(公傷軍警)
- 제7호 : 무공수훈자, 제8호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그리고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중에서 자구 수정 등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 (1)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제1호 본문 중 ‘국가보훈청장’ 으로 표현되어 있는 명칭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국가보훈처장’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 (2) 조례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은 법명이 2007. 1. 3(법률 제8171호)일자로 ‘전자정부법’ 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戰爭"이라 함은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戰鬪 및 1948年 8月 15日부터 1955年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戰鬪 중 別表의 戰鬪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年 7월 18일부터 1973年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戰爭에 參戰하고 轉役(退役 또는 免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軍人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現役服務중 1964年 7月 18日부터 1973年 3月 23日까지 사이에 越南戰爭에 參戰하고 轉役된 軍人
- 다. 6·25戰爭에 參戰하고 退職한 警察公務員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越南戰爭에 參戰한 사실이 있다고 國防部長官이 인정한 者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第4條 (國家등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참전유공자의 禮遇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名譽를 宣揚하기 위한 事業
2. 참전유공자의 護國精神을 承繼하기 위한 事業
3. 참전유공자의 福利를 증진하기 위한 事業
4. 6·25戰爭 參戰國과의 友好增進을 위한 事業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適用對象 國家有功者)**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改正 1988.12.31, 1991.12.27, 1993.12.31, 1994.12.31, 1999.8.31, 2000.12.30, 2002.1.26, 2005.7.29>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戰歿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痕을 입고 轉役(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退職(免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痕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痕을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痕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戰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痕을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痕을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5. 殉職軍警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痕(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痕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公傷軍警 :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教育訓練 또는 職務遂行중 傷痕(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7. 武功受勳者 : 武功勳章을 받은 者

7의2. 保國受勳者 : 保國勳章을 받은 者

8. 6·25參戰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日本國에 居住하던 者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의 사이에 國軍 또는 國際聯合軍에 志願 入隊하여 6·25事變에 參戰하고 除隊된 者(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9. 4·19革命死亡者 :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死亡한 者

10. 4·19革命負傷者 :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傷痕을 입은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10의2. 4.19革命功勞者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建國褒章을 받은 자

11. 殉職公務員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殉職者(이하 "特別功勞殉職者"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殉職한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14.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傷痍者(이하 "特別功勞傷痍者"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傷痍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15.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者(이하 "特別功勞者"라 한다) :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第13號 및 第14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愛國志士의 禮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新設 19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規定에 의한 國家有功者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